

어 린 이 안 전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제 정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31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안 제2조)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안 제4조)

1)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토록 함

다.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안 제5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시설 내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8. 5. ~ 9. 1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①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안전교육(실습교육 포함)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안전교육 대상자)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담당자”는 어린이이용시설에서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①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는 공문 또는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년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교육 실시 현황과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 ①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내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 00호. 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사업 내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제 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illegible]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결과 (년도)

교육실시기관 현황	시설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실시 결과	전체 종사자(명)	교육대상 종사자(명)	교육실시 인원(명)
	비고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귀하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1. 교육 실시자 현황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연번	부서	담당업무	성명	교육 일시	교육 기관	비고

2. 교육 미실시자 현황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연번	부서	담당업무	성명	교육 미 실시 사유	비고

* 교육 대상자 중 미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작성

[붙임] 교육 이수 증명서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

일자	부서	직급	성명	지정 사유	비고